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9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복지시설 위치를 현주소로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조례설치 관계법령 및 복지시설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
 - 장애인복지법 “제38조”를 “제49조”로 변경(안 제1조)
 - 복지시설 주소를 충주시 호암동 “산 751-1번지”에서 “산 751-7번지”로 함(안 제2조제1항)

3. 의안전문 : 별첨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첨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장애인복지법 제38조”를 “장애인복지법 제49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충주시 호암동 산 751-1번지”을 “충주시 호암동 산 751-7번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장애인</u> <u>복지법 제38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시설(이 하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 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장애인</u> <u>복지법 제49조</u></p>
<p>제2조(위치) ①복지시설은 <u>충주시</u> <u>호암동 산 751-1번지</u>에 둔다. 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위치) ①..... <u>충주시</u> <u>호암동 산 751-7번지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제법령 발췌

□ 장애인복지법

제49조 (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 다만,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.

③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, 신고, 변경신고 및 입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